청렴韓세상

안내서 등록번호
안내서-1145-0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2021. 9.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1년 9월 14 일

담당자 정 인 권

확 인(부서장) 정 정 순

이 안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 비대면 조사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1년 9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6208
팩스번호: 043-719-6200

제 · 개정 이력서

제·개정 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안내서-1145-01	2021.9.14.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제정

순 서

Ⅰ. 개요 ····· 1

Ⅱ. 세부 운영방안 ····· 3

1. 평가대상 ····· 3

2. 조사 원칙 및 절차 ····· 4

3. 비대면 조사 관련 보안체계 ····· 5

4. 비대면 조사 세부 심사 절차 ····· 9

4-1. 비대면 조사 절차 ····· 9

4-2. 사전 조율 · 협의 ····· 9

4-3. 서류조사 ····· 10

4-4. 영상조사를 위한 준비사항 ····· 11

4-5. 영상조사 ····· 12

4-6. 비대면 원격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14

4-7. 비대면 조사 입력 및 부적합 통보 ····· 15

순 서

【붙 임】

1.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세부절차 ····· 16

2. 비대면 서류조사 제출 항목(요약) ····· 17

3. 비대면 서류조사 제출서류 상세 안내문 ····· 18

4. 해외제조업소 원격 영상조사 사전 점검표(안) ····· 22

5. 영상조사 사전 안내문 ····· 23

6. 원격점검 장치(스마트 글라스 등) 비교 안내 ····· 24

7. 현장점검 수행자의 정보보안 서약서 ····· 25

8. 개인정보 수집 및 영상 촬영 활용 협조 동의서 ····· 26

9. 해외제조업소 서류조사 세부 확인 사항 ····· 27

10. 해외제조업소 영상조사 진행단계별 확인 사항 ····· 28

11. 제외국 영상회의 진행 체크리스트(안) ····· 29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격 점검 가이드라인 ·· 30

Ⅰ 개요

1. 배경

천재지변, 감염병 등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효율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인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비대면 조사**'를 이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자 한다.

2. 목적

이 매뉴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8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현지실사 등을 위탁받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도 이 매뉴얼을 준용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비대면 조사

감염병 등으로 **현지실사 등이 어렵거나, 효율적 조사**가 **필요**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상조사**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함을 말한다.

나. 신속·효율적 조사

‘신속·효율적 조사’라 함은 **위해 정보에 따라 긴급히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 원칙에 따라 서류조사가 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

다. 비대면 조사 수단

‘비대면 조사 수단’이라 함은 **컴퓨터·인터넷 또는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라. 보안 조치

‘보안 조치’라 함은 비대면 조사를 위한 자료·영상 등을 수신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말한다.

마. 현장점검 심사관

‘현장점검 심사관’이라 함은 비대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위탁기관 포함)의 **해외실사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바. 현장점검 수행자

‘현장점검 수행자’라 함은 영상조사 시 **현장점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영상 장비를 보유한 **해외 위탁업체의 영상 송신 등 원격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실사 대상 통신품질(RSRP)

‘실사 대상 통신품질’이라 함은 **레퍼런스 신호 수신 전력**을 말하며 주변 기지국의 수신신호 강도를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100보다 높은 경우에 비대면 영상조사가 가능**하다.

Ⅱ 세부 운영방안

1 평가대상

□ 식품

○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정보 등에 따라 **해외 실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해외제조업소**(법 제6조)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법 제7조)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해외제조업소(법 제18조)

□ 수산물

○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정보 등에 따라 **해외 실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해외제조업소**(법 제6조)

□ 축산물

○ 해외작업장 등록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법 제12조)

<비대면 조사 대상 구분>

구 분		주요 내용(비대면)	근거법령
식품	해외제조업소	▸ (식약처) 서류조사 + 영상조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부 위탁	제6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 (최초등록, 식약처) 서류조사 + 영상조사 ▸ (정기점검, 영업자) 서류조사 + 영상조사 - 위생평가기관 위탁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구 분		주요 내용(비대면)	근거법령
	OEM	▸ (영업자) 서류조사 + 영상조사 - 위생평가기관 위탁	제18조제2항 (영업자 준수사항)
수산	해외제조업소	▸ (식약처) 서류조사 + 영상조사	제6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축산	해외작업장	▸ (식약처) 서류조사 + 영상조사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 위생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스코,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21.9.기준)

2 조사 원칙 및 절차

□ 조사 원칙

○ 비대면 조사의 원칙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는 **서류조사**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상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예)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 다만, **조사대상 및 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조사 생략 조건 예시>

① 산가, 내용량 등 **위해 우려가 낮은 항목으로 부적합** 된 경우

② 최초 수입되어 부적합 된 이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외국 상황에 의해,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영상장치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가목 13)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서류검사 대상 식품 등**

□ 조사 절차

○ ①사전 조율·협의, ②서류검토 및 보완, ③영상조사 사전 준비, ④영상 조사, ⑤결과 평가 및 기록 관리, ⑥결과 통보 및 조치 **총 6단계로 구성**한다.

* 해외제조업소 실사 절차(붙임1)

□ 조사 기간

○ 서류 및 영상조사 결과, 미흡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충분한 조사 기간을 정한다.

* 통신장애 등 없이 정상적으로 영상조사가 진행될 경우 대략 1일 소요

3 비대면 조사 관련 보안체계

1 공통사항

○ 제외국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영상장치 가능 여부 및 보안성 조사**

-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Cisco Webex, RingCentral)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붙임7) 및 송수신에 따른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영상장치 포함)

*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을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 전달

○ 기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체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실사 조사를 위한 제출서류, 사진, 녹화 영상 등은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등록·제출한다.

- 다만, 수입영업자가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우수수입업소, OEM 실사**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한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별도 ID를 부여**하여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사용**

<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

✓ **수입식품 통합데이터에 저장된 사진, 영상 영구 보존**

✓ **ID 및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폐쇄망 회로**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해킹 여부 등 서버 보완 상태 모니터링 관리**

2 회의 준비단계

○ 영상회의시스템 및 업무용 노트북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최신 보안 업데이트, 비인가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한다.

○ 보안담당자 지정, 개인 노트북 사용 금지·비밀취급 인원 인가 절차 준수, 문서파일은 비밀번호를 적용한다.

○ 스마트 글라스 등 영상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원격 영상조사 사전 점검표(안)*'**에 따라 영상조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붙임4)

* 원격 점검 환경, 화상회의 인프라, 원격장비 구비 여부 확인

○ 국정원의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용하여 **'점검대상 업체와 점검기관 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안)'**과 **'제외국 영상회의 진행 체크리스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8, 붙임11)

* 필요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격 점검 가이드라인 활용

○ 영상회의 프로그램, 촬영·점검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다.

- (**상대국**) 영상회의 프로그램(Webex 등), 촬영 장비(AR글라스, 스마트폰 등), 점검 장비(온도계 등), 인력(수행자, 통역 등), 설명자료(제조공정도 등)

- (**우리나라**) 영상회의 프로그램(Webex 등), 인력(평가인력, 통역 등)

3 회의 진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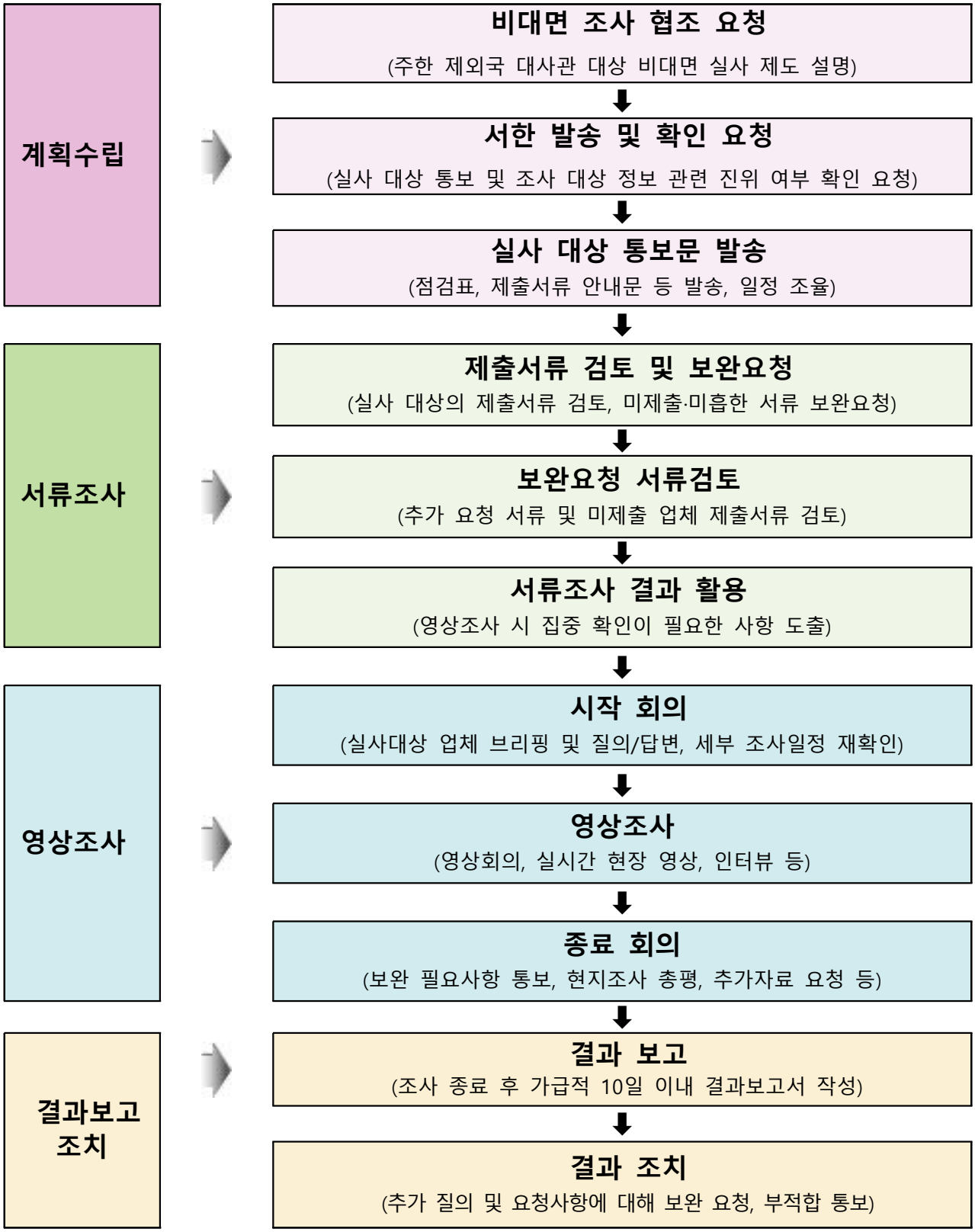
○ 회의 문서나 자료 전송 시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업무용 E-mail을 사용한다.

○ 회의 시간 동안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 휴식 시간에는 영상회의 시스템 카메라·마이크 전원을 차단한다.

4 회의 완료단계

○ 영상회의시스템 및 회의 관련 PC 등 저장 자료는 '**수입식품 통합 시스템**'에 등록 후 삭제한다.

□ 비대면 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비대면 조사 협조 요청
(주한 제외국 대사관 대상 비대면 실사 제도 설명)
서한 발송 및 확인 요청
(실사 대상 통보 및 조사 대상 정보 관련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실사 대상 통보문 발송
(점검표, 제출서류 안내문 등 발송, 일정 조율)
서류조사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실사 대상의 제출서류 검토, 미제출·미흡한 서류 보완요청)
보완요청 서류검토
(추가 요청 서류 및 미제출 업체 제출서류 검토)
서류조사 결과 활용
(영상조사 시 집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 도출)
영상조사
시작 회의
(실사대상 업체 브리핑 및 질의/답변, 세부 조사일정 재확인)
영상조사
(영상회의, 실시간 현장 영상, 인터뷰 등)
종료 회의
(보완 필요사항 통보, 현지조사 총평, 추가자료 요청 등)
결과보고 조치
결과 보고
(조사 종료 후 가급적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 조치
(추가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 부적합 통보)

4 비대면 조사 세부 심사 절차

1 비대면 조사 절차

○ **(절차)** 비대면 조사는 **서류** 및 **영상조사**로 이뤄지며, 실사 대상 해외제조업소 등에서 문서, 기록, 사진 등을 받아 **서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상조사를 통해 현장을 평가**

○ **(조사 연기)** 천재지변, 화재, 재해, 점검 대상자 질병 등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장비 이상(고장 등), 무선통신 일시 오류(공장 주변 일시적 트래픽 증가 등)일 경우 상황 복구 시까지 연기 가능

* 증거인멸, 자료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점검 자료를 우선 요구

○ **(점검 시간)** 원칙적으로 9시~18시(현지시간 기준)로 하고, 평가 장비 배터리의 소모 전력을 고려하여 업체당 3~4시간을 점검하되 업체의 특성, 선정 사유, 점검 난이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적용 범위)** 효율적 점검을 위해 관련 서류는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2년까지 점검·확인

2 사전 조율·협의

① 주한 제외국 대사관에 비대면 현지조사 설명 및 협조 요청

- 외교부(재외 공관) 및 수출국 정부 기관(주한 대사관)에 현지실사(비대면) 방법 및 대상 목록 통보, 제조공장 확인 요청

② 평가대상 업체에 비대면 평가 알림(공문) 및 **제출서류 안내문 제시**(붙임2, 3)

- 점검표 해당 항목 예시(사진), 현장점검 수행자 방문 알림, 해외 제조업소 원격 영상조사 사전점검표 등 구체적으로 설명(붙임4)

〈 점검표 작성 방법 안내문 요약〉

① 점검표는 해당되는 업종의 점검표 사용(식품, 축산물, 수산물)
② 평가항목은 중요 항목 또는 일반 항목에 O(적합) 또는 X(부적합) 표시
③ 평가항목 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 항목에서 제외 사유 기재
④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된 사항은 개선 전·후 사진 자료 제출
⑤ 점검표에 점검주체(정부, 업소), 점검자 성명, 상세 점검내용 기록
⑥ 증빙자료 미 제출시 해당 항목에 대해 부적합(X)처리 안내

◈ **비대면 평가 알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사 대상에 대한 사후 조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 **(제출기한) 평가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은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60일이며, 90일(1차 60일, 2차 30일) 기한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 **(미제출) 평가 관련 서류를 연장 제출 기간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실사 대상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미운영 등) 주한 대사관을 통해 실사 대상 업소가 미등록 제조업소 등으로 통보 된 경우 즉시 수입업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즉시 등록 취소 등 조치**

3 서류조사

① (제조업소) 요청된 서류, 사진 등을 제출(서류 6종*+사진 16종)

* 점검표, 영업 등록증, 온도계 검교정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건강 증명서 또는 질병관리기준, 수질검사 성적서(붙임3)

② (점검기관)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번역(현지어→한국어) 및 검토 진행하고 미제출, 미흡 서류 등은 실사대상 업소에 서류 보완 요청

③ (제조업소) 보완 요청서류 확인 및 추가 제출

* **영상조사 전 서류 준비 요청**: 작업장평면도, 물류 및 종업원 동선계획, 제조공정도, 외부인 출입관리, 작업장 조도·온도 관리, 위생복장·검교정 관리, 부적합품 및 폐기물 관리, 원료 검사성적서, 원부재료 입출고·생산·판매기록, 검사관리, 회수·클레임 관리, 운송관리, 교육기록 등에 관한 기준 및 기록 등

④ (점검기관) 제출자료 검토를 통해 영상조사 시 집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 도출

◈ **서류 검토 중 사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 **(공증서류) 제조업소 등록증 등을 영어 외 제3국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공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권장**

- 제출된 공증문서를 근거로 사실관계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할 것

✔ **(변경)** 기존 등록된 주소와 제출서류 주소, 상호명 등이 다른 경우 즉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자 등에게 변경요청 하도록 통보

4 영상조사를 위한 준비사항

① (제조업소, 점검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원격 조사 적용 가능성 검토**

○ 실사 대상의 통신 품질(RSRP) 사전 점검을 통해 평가대상의 영상조사 가능 여부 판단

* 인터넷 환경 확인, 사용할 ICT 기술(점검장비 및 스트리밍 플랫폼 등) 적용 가능성 검토

② (제조업소, 점검기관) 영상 실사 **일정 협의, 현장 촬영 동의·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③ (점검기관) **현장점검 수행자 대상 점검표 및 영상 조사 절차 교육**

○ 현지실사 개요, 점검 항목, 서류점검, 현장점검 진행 절차 및 출입 시 방역, 위생절차 준수 등 교육

○ 영상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서약서 수령**(붙임7)

◈ **현지 업소의 Wifi, 에이전트 장비(테더링, 포켓Wifi 등) 등 가용 네트워크 중에서 신호 감도가 양호한 장비 활용**

◈ **해당국 현장점검 수행자는 가급적 식품·축산물 등 관련 실사 경험이 있으며, 영상장비를 활용한 회의 진행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한다.**

5 영상조사

① 시작회의

○ 인사, 조사단 소개, 현장점검 착수 전 점검 대상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목적, 절차 및 수행자(통역 등)의 역할 소개

○ 업체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

* 해당 작업장 생산 식품 유형(품목), 연간 생산실적, 매출액, 작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② 경영자, 종업원 면담

○ 경영진, 공장장, HACCP 팀장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책임자급 면담 실시

③ 현장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 협조 동의서 작성 여부 확인

○ 영상회의 및 심사 진행에 따른 초상권, 영상회의·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으로 생성되는 영상·사진의 수집 및 제공 항목 설명

④ 원격 점검

○ 평가자는 현장점검 수행자에게 장비(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를 착용하도록 하고 양방향 연결 여부를 확인

○ 현장점검 수행자가 작업장 내·외부를 작업자/제품 이동 동선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고 평가자는 수시로 도면을 확인하며 위치 파악

< **점검 절차** >

순서	이동 동선	분	영상조사 주요항목
1	환경 위생	10	■ (2항목) 건물위치, 폐수처리시설 격리 여부
2	작업장위생	65	■ (13항목) 작업장 독립건물, 밀폐 구조, 배수트랩 등
3	취급시설	15	■ (3항목) 기계기구 청결, 내수성 재질, 냉장·냉동 시설
4	제조·가공	10	■ (2항목) 작업실 청결, 열처리 온도
5	보관 위생	15	■ (3항목) 원부자재 등 별도 보관, 원부자재 등 밀착 등
6	개인 위생	10	■ (2항목) 위생복 착용, 장신구 착용
7	화장실	20	■ (4항목) 수세식, 내수처리, 수세시설, 환기시설
8	급수시설	15	■ (3항목) 지하수 살균장비, 저장탱크 잠금, 음용수 호수 관리
9	기타 위생	25	■ (5항목) 탈의실 위치, 탈의실 환기시설, 탈의실 보관함 등

ㅇ 평가자는 시설·설비 등 현장 운영 상태, 현장 점검표 항목의 실제 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와 인터뷰 병행

ㅇ 비대면 원격 점검 특성상 설명 내용 등이 이해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여 조사의 공정성 확보

◈ **현장 영상조사 시 주의사항**

✔ 구글 글라스 등 영상 장비를 활용(여분의 영상 장비 준비)하며, **통신장애 등 발생 시 적절한 장비 적용**

✔ **2/3 지점에서 통신 장애** 등으로 영상조사가 불가한 경우, **녹화 영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1/3 지점**에서 통신 장애 등이 발생 된 경우에는 **영상조사 일정을 조정**

✔ 냉장·냉동창고 등 통신장애 구역 등 점검 시에는 사전교육을 통해 **현장점검 수행자가 사전교육을 통해 숙지한 내용대로 영상 녹화**하여 점검

✔ 해당 점검업소 품목 중 **대표 공정**을 선정하여 **현장 영상조사**하고, 출입구부터 공정흐름도에 따라 진행

✔ 영상조사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할 경우 **영상회의 때 질문**하고 **녹화 영상** 요청

6 비대면 원격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ㅇ 영상 조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와 특이사항 등 **비대면 조사 결과를 요약 설명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

- 서류 + 현장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기준이 상이하고 미흡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 조사단 점검 사항에 대한 **실사 대상 업체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ㅇ 점검자는 점검표를 영상회의 화면에 공유하고 개선 요청사항 및 향후 계획(보완 서류 제출 일정 등) 공유

⑦ 비대면 조사 결과 입력 및 부적합 통보

○ 조사 결과 입력 및 부적합 업체 개선사항 회신 방법 설명

- 제출서류 및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 업소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최대 1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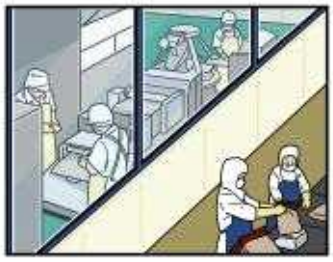
붙임 1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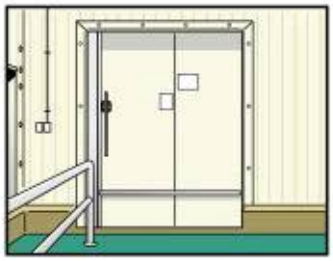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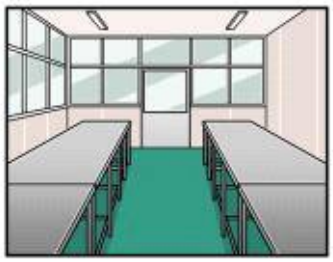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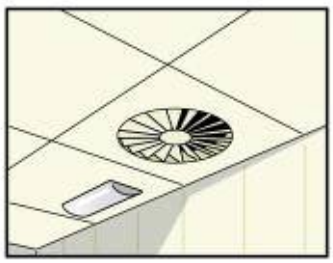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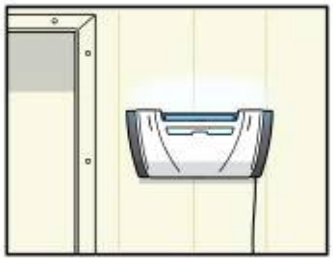
절차	구분	서류 조사	영상 조사
원격 심사 검토	점검기관 해외제조업소	• 점검기관과 심사대상(해외제조업소) 간의 비대면 심사 적용 여부 상호 협의 – 현지점검 가능 여부 검토(코로나-19 해외동향, 국가별 입·출국 제재상황 등) – 비대면 조사 수행 가능성 검토(ICT 기술 사용 가능성, 담당자의 원격기술 활용능력 등) – 비대면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검토	
심사 계획 수립	점검기관	• 서류 조사항목 수립 및 평가서류 제출 요청	• 비대면 조사 기술역량 확인 및 점검 계획 수립 – 인터넷 환경 확인 – 사용할 디바이스 및 스트리밍 플랫폼 확인 – 심사일정 수립 등
심사 진행	해외제조업소	• 평가 및 관련 서류 제출	
	점검기관	• 제출서류 접수, 번역 및 검토	
	점검기관	• 미제출·미흡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 요청	• 비대면 조사 절차 등 정보 제공(전자메일) ① 비대면 조사 준비사항, 점검 방법 및 절차 ② 회의 앱 활용 매뉴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영상 촬영 활용 협조 동의서 • 스마트 글라스 및 사용 매뉴얼 제공(업체 미보유 시) • 원격점검 사전 점검 ① 사용된 모든 개별 장치 테스트 – 디바이스 정상 작동, 배터리 충전 상태 등 ② 회의운영 테스트 및 방법 숙지 – 초대·수락, 문서·사진·영상 공유 – 음소거/음소거 해제, 영상 켜기/끄기 ③ 문제 해결을 위한 IT지원
	해외제조업소	• 보완 서류 제출	• 비대면 조사 준비 ① 화상회의 가능 장치(예: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② 현장점검용 디바이스(예: 스마트 글라스, 비디오 카메라) ③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④ 실시간 스트리밍 앱 확인 – 일반 화상회의 앱(예: Zoom, Webex) – 평가전용 화상회의 앱(예: Aron, EyeSucceed)
	점검기관	• 서류 조사 (제출서류 관련 점검 항목 등 평가)	• 영상 조사 ① 방법 : 현지실사와 동일 ② 절차 : 인터뷰 → 서류검토 → 현장점검
	점검기관	• 결과 보고 (심사결과 및 특이사항 보고)	
		• 기록 및 유지 (제출서류 및 심사결과 등 기록 관리)	
		•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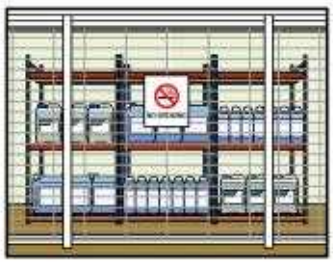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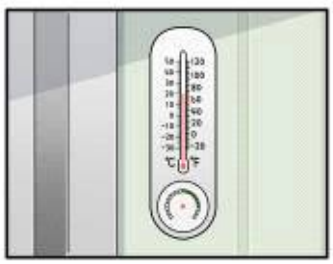
붙임 2 비대면 서류조사 제출 항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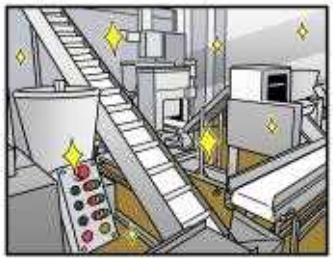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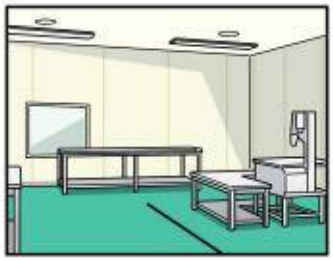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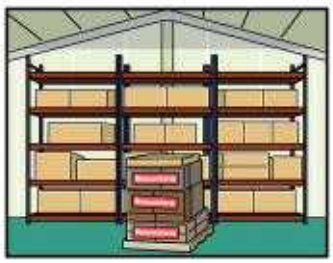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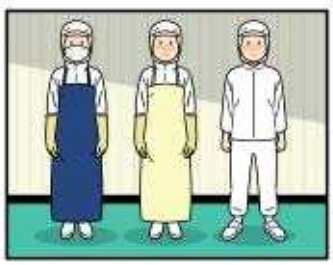
연번	분야	제출서류	비고
1	기본 자료	■ 점검표·일반현황	서류
		■ 영업(공장) 등록증	서류
2	작업장	■ 조도 측정	사진
		■ 방충방서(포충등 또는 방충망)	사진
		■ 세척・소독제 보관 장소	사진
		■ 작업장 출입문 등 밀폐구조 확인	사진
		■ 온도계설치 또는 관리시스템	사진
		■ 작업실별 분리, 구분	사진
		■ 배수트랩	사진
		■ 바닥, 벽면 및 천장 확인	사진
		■ 환기시설	사진
		■ 조명커버	사진
3	식품 취급시설	■ 기계・기구류 청결 관리	사진
		■ 온도장치 검·교정 증명서 또는 요약본	서류
4	제조·가공	■ 제조가공실, 포장실	사진
5	보관관리	■ 부적합품 식별 보관	사진
6	제품검사	■ 완제품 검사성적서	서류
7	개인위생	■ 작업별 위생복 착용법 게시물	사진
		■ 손세척 시설	사진
		■ 건강 증명서 또는 질병관리기준	서류
8	급수시설	■ 수질검사 성적서	서류
9	기타	■ 위생복, 위생화 보관	사진

붙임 3 비대면 서류조사 제출서류 상세 안내문

평가항목	상세설명	예시(사진)
1. 온도장치 검·교정 기록서	식품 제조·가공·보관 등을 위해 설치된 온도계에 대해서 공인검사기관에서 검·교정 실시한 성적서 (설비명, 검사일자, 검·교정 결과 항목 포함) *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자료	
2. 완제품 검사성적서	완제품에 대해서 자체 실험실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검체명, 검사일자, 제조일자,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등 포함) *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자료	
3. 건강증명서 또는 질병관리기준	종사자에 대해서 전염성질병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 관리기록서 또는 종업원 건강관리 기준서 *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자료	
4. 수질검사 성적서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국가 수질 검사 기준 항목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 검사 성적서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돗물 이용시 요금명세서 제출 *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자료	
5. 작업실별 분리,구분 사진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이 분리·구획된 사진 (예) 작업실별 구분 증빙자료(도면 또는 작업실 사진 등) 포함	

평가항목	상세설명	예시(사진)
6. 작업장 출입문 사진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차단을 위해 작업장 및 작업실 밀폐 구조 또는 밀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작업장 및 작업실 출입문 사진	
7. 배수트랩 사진	배수 및 침전물 관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사진 (예) 배출트랩 사진	
8. 작업실 사진 (바닥,벽면,천장)	제조·가공 시설의 바닥, 벽면, 천장의 상태 및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제조실 바닥, 벽면, 천장 사진 각 1장	
9. 환기시설 사진	작업장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환기시설 사진	
10. 방충방서(포충등 또는 방충망) 사진	작업장의 포충등, 쥐트랩, 방충망 설치 사진 (예) 포충등, 방충망 사진,	

평가항목	상세설명	예시(사진)
11. 조도측정 사진	작업실의 조도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조도측정 결과 사진	
12. 세척·소독제 보관 장소 사진	세척·소독제를 식품취급구역으로부터 격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세척·소독제 보관 장소 사진	
13. 온도계 또는 관리시스템 사진	작업실내 해당 온도 조건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등 설비 사진 (예) 작업장 온도계 또는 온도 관리시스템 사진	
14. 조명사진	조명시설 파손시 작업장 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재료 및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조명 확대 촬영(클로즈업) 사진	
15. 손세척 시설 사진	식품 제조·가공시 손세척 및 소독설비 확인이 가능한 사진 (예) 손세척 및 소독설비 전체 사진	

평가항목	상세설명	예시(사진)
16. 기계・기구류 청결 관리 사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등이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주요 공정 기계류 사진 첨부(2장 이상) * 혼합기, 컨베이어벨트 등	
17. 제조・가공실 또는 충진(포장)실 사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작업실이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제조・가공실 또는 충진(포장)실 사진	
18. 부적합품 식별 보관 사진	부적합품의 별도 식별 구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부적합품 보관장소 사진	
19. 위생복장 착용 사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종업원의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예) 복장착용 사진 또는 작업실별 위생복 착용법 게시물 사진	
20. 위생복, 위생화 보관 사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종업원의 위생복, 위생화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진 (예) 위생복, 위생화 보관 사진	

붙임 4 해외제조업소 원격 영상조사 사전 점검표(안)

원격점검 환경	내부지침	□ 정보보안 지침 □ 영상회의 보안 지침
		□ 개인정보 관리지침 □ 기타 보안관련 지침( )
	작업장 통신환경	□ 전체 구역 통신 안정 □ 일부 구역 불안정 □ 전체 구역 불안정
	통신환경개선	□ 가능 □ 불가능
	통신도구	□ 와이파이 공유기 사용 (공유기 제품명 :) □ 휴대전화 테더링 사용 (휴대전화 제품명:)
화상회의 인프라	인프라	□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 □ 모니터 □ 웹캠 □ 마이크
	보안	□ 보안접속프로그램 (제품명 :) □ 백신프로그램 (제품명 :) □ 기타프로그램 (제품명 :)
	영상회의 플랫폼	□ Cisco Webex □ Skype □ Zoom □ MS Teams
		□ FaceTime □ RingCentral □ 자체구축 □ 기타( )
원격점검 장비	일반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 비디오카메라 □ 액션캠 □ 기타( )
	웨어러블 장비명	Google Glass □ Explorer 2 □ Enterprise Edition 2
		VUZIX □ Blade □ M400 □ M4000
		□ Microsoft Hololens2 □ RealWear □ FITT360 □ 기타( )

붙임 5 **영상조사 사전 안내문**

영상조사 사전 안내문

Preliminary Notifications about the Remote Audit

000기관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위해 영상실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화상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성하셔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000 intends to hold a remote audit regarding to the 「On-sit Inspection for a Foreign Facility」. We are trying to make some arrangements before conducting the video conference, so please fill out and return the attached form.

희망일시 Expecting date	(1안) Option 1	(2안) Option 2
참석인원 Participants	직책 Positon	성명 Name
기타 요청사항 Other request		

붙임 6 원격점검 장치(스마트 글라스 등) 비교 안내

구분	기기명	사진	무게 (g)	카메라 화소	저장 공간 (GB)	배터리 용량 (mAh)	특징
일반 사양	FITT360		240	570만	64	1,920	• 외장메모리 이용 가능 • 약 60분간 연속녹화 가능, 충전시간 최대 2시간 • 넥 밴드형 • 360도 다자간 영상통화 가능(최대 4명) • 앱 연동하여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
	VUZIX Blade		222	800만	64	470	• 터치와 음성으로 조작 • 인공지능 알렉사를 적용해 스마트폰 기능 활용 •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화면을 안경 디스플레이 통해 정보 확인 가능
	Google Glass Enterprise Edition 2		46	800만	32	820	• 배터리 지속시간 약 8시간 • Glass 앱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 • 방수 및 방진 기능 • 블루투스와 WiFi 지원 • 오디오 탑재
고(高) 사양	VUZIX M400		190	800만	64	750	• OLED 디스플레이 • 1 미터 방수 및 먼지 차단 • 2 미터 낙하 테스트 • 자동 초점 (PDAF) • 블루투스 헤드셋 지원 • 양쪽 안경 지원
	VUZIX M4000		222	800만	64	750	• DLP 디스플레이 • 1 미터 방수 및 먼지 차단 • 1 미터 낙하 테스트 • 자동 초점 (PDAF) • 블루투스 헤드셋 지원
	Microsoft Hololens2		566	800만	64	16,500 (mWh)	• 아이트래킹 및 핸드트래킹 가능 • 5개 채널을 통한 음성인식 • 실사용 2-3시간 가능 • 블루투스와 WiFi 지원 • 6DoF 지원(6자유도, 기기의 3차원 위치 인식)
	RealWear		380	800만	32	3250	• 실사용 9-10시간 가능 • 2세트의 마이크로 음성인식 및 잡음 제거 • 붐암을 통한 디스플레이 위치 조정으로 원활한 시야 확보 가능 • 내장 손전등 기능 포함 • 9DoF 지원(9자유도, 기기의 3차원 위치 인식)

붙임 7 **현장점검 수행자의 정보보안 서약서**

서 약 서

(00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00주소)에 있는 (00회사)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00주소)에 있는 000기관 간 0000년 0월 0일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인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련 영상 실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본인은 해외제조업소 등 현지실사 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 등 상업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 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 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 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을 위해 얻은 정보는 업무수행 종료 시 관련 정보 서류 등 일체를 반환함.

○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등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자국법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과 처벌을 받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주 소 :
이 름 :

OOO기관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수집 및 영상 촬영 활용 협조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영상 촬영 협조 동의서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Video Recording Consent Form

OOO기관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수행을 위한 원격 협업도구 사용 및 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영상정보는 현지실사 이외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OO intends to use remote collaboration tools and hold a remote audit to conduct 「On-site inspection for a Foreign Facility」.We request for the consent accordingly, so carefully read the following and make your decision. Please be informed that the video recorded from the conference wi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s aside from the on-site inspection.

☐ 수집 목적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영상 실사
☐ 수집 및 제공 항목 : 영상회의 및 심사 진행에 따른 초상권, 평가 관련 사진·영상 자료
☐ 보유기간 : 5년
☐ Purpose : Remote Audit for Foreign Facilities
☐ Items : Portrait rights, photos, and video materials related to the video conference and the proceedings of remote 「On-site Inspection」
☐ Holding Period: 5 years

※ 촬영 협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OOO기관에서 실시하는 비대면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Please be informed that remote 「On-site Inspection」 by the OOO shall not be proceeded if you do not agree with the recording.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Do you agree with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video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 (Yes , No)**

. . . (yy. mm. dd)

Company Name : _____
Name : _____ (Signature)

OOO기관장 귀중

붙임 9 해외제조업소 서류조사 세부 확인사항

항목	내용	주요 확인사항	적용 문항
제출자료 확인사항	점검표 및 제출서류 검토내용	점검표 및 제출서류 검토내용 확인	
현황	업소현황	생산유형,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 인증현황	
환경 위생	업소 환경	주변 환경, 작업장 평면도, 외부인 출입 관리 등	2, 3
작업장 위생	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및 일지	세척소독, 방충방서, 구역설정, 조도/온도관리 등	3, 4, 5, 12, 13, 16, 17, 18
식품 등 취급시설 위생	시설 위생관리	냉장냉동시설 관리, 온도계 검교정 등	23, 25, 26
원료 등 위생	원부재료 관리	원부재료 검사, 입출고 관리 등	27, 28, 29
제조가공 위생	제조공정 확인	제조공정 확인, 열처리・살균・멸균 공정 기준 등	32, 33, 34, 35, 36
제품 등 보관 위생	보관관리	원・부재료, 반제품, 완제품, 부적합품 보관관리 등	40
검사 위생	실험실 및 검사항목	실험실 현황, 완제품 검사기준, 교육・훈련, 검・교정 등	41, 42, 43, 44, 45, 46, 47, 48
개인위생	개인위생관리	종업원 위생관리, 위생복장, 질병관리, 교육 등	49, 50, 51, 52, 53, 54
화장실 위생	화장실 관리	화장실 형태, 위생설비 등	55
급수시설 위생	용수 종류 및 정수처리 방식	용수, 배관, 저장탱크 등	59, 60, 61, 62, 64, 65, 67
기타 위생	탈의실, 폐수, 폐기물, 운반	탈의실 위생관리, 회수・추적관리, 완제품 운반 등	71, 72, 73, 74, 76, 78, 79, 80

붙임 10 해외제조업소 영상조사 진행단계별 확인 사항

평가항목		방법		평가항목		방법	
주요내용	항목번호	서류점검	현장점검	주요내용	항목번호	서류점검	현장점검
환경 위생	1		o	검사 위생	41	o	
	2	o			42	o	o
	3	o			43	o	
작업장 위생	4	o	o		44	o	
	5	o	o		45	o	
	6		o		46	o	
	7		o		47	o	
	8		o		48	o	
	9		o	개인위생	49	o	o
	10		o		50	o	
	11		o		51	o	
	12	o			52	o	
	13	o			53	o	
	14		o		54	o	
	15		o	화장실 위생	55	o	o
	16	o			56		o
	17	o			57		o
	18	o			58		o
	19		o	급수시설 위생	59	o	
	20		o		60	o	o
	21		o		61	o	
식품등 취급시설 위생	22		o		62	o	o
	23	o	o		63		o
	24		o		64	o	o
	25	o			65	o	o
	26	o			66		o
원료 등 위생	27	o			67	o	
	28	o		기타 위생	68	o	o
	29	o			69		o
제조·가공 위생	30		o		70		o
	31		o		71	o	
	32	o			72	o	
	33	o	o		73	o	
	34	o	o		74	o	
	35	o			75		o
	36	o			76	o	
제품 등 보관 위생	37		o		77		o
	38		o		78	o	
	39		o		79	o	
	40	o	o		80	o	

붙임 11 제외국 영상회의 진행 체크리스트(안)

	체크사항		YES	NO
회의 준비	인원·시설	영상회의 진행 관련 전담 보안담당관을 지정했는가?		
		개인 노트북 사용금지 등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했는가?		
		문서유출에 대비, 가림막 설치 및 거울 등을 제거했는가?		
	문서	회의 자료를 적정 비밀등급으로 생산했는가?		
	對도청·사이버	민간 도청탐지업체 또는 육안을 통해 對도청 점검을 했는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했는가?		
		非인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는가?		
회의 진행	인원·시설	非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했는가?		
		카메라·녹음기·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했는가?		
		CCTV를 이용한 무단 내부촬영을 금지했는가?		
		휴식시간 중 카메라·마이크 전원을 차단했는가?		
	문서	휴식시간 및 회의 종료 후 문서 방치여부를 확인했는가?		
		회의 문서·자료 전송시 업무용 E-mail을 사용했는가?		
	對도청·사이버	非인가 저장장치 및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는가?		
		불필요한 자료 노출에 대비, PC화면 등을 정리했는가?		
회의 종료	문서	비밀 등 관련문서 분실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존안이 필요 없는 문서는 보안담당관 주관 아래 파기했는가?		
	對도청·사이버	도청 방어장비가 설치된 경우 회수했는가?		
		영상회의시스템 및 렌탈 장비內 회의 자료를 삭제했는가?		

붙임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격 점검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보안 대책
공통보안대책		◦ 회의 참여자 신원 확인 ◦ 원칙적으로 회의내용 녹화 금지 ◦ 화상회의 참여 접근코드(Access Code) 재사용 금지 ◦ 화면상에 민감한 문서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불필요한 채팅이나 파일공유 기능 비활성화 ◦ 회의방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PIN) 사용 <중요 회의 시 추가 보안대책> ◦ 점검기관이 지급한 단말기 사용 ◦ 모든 참여자가 회의방 입장 후 회의방 잠금(Locking) ◦ 회의 주최자만 PC화면 공유 가능 ◦ 회의내용 녹화시 암호화 조치
단계별 보안 대책	화상 회의 전	◦ 점검기관의 화상회의 보안정책 마련 및 준수 ◦ 화상회의 참여 접근코드 재사용 제한(화상회의 참여시 필요한 코드) ◦ 회의 논의 내용이 민감한 사항인 경우, 일회용 PIN 혹은 회의 식별코드를 사용하고, 다중요소 인증 적용도 고려 <*추가 보안대책*> ◦ 점검기관이 개설한 화상회의 솔루션만 사용하고, 개별 회의 참여자에게 고유한 PIN 혹은 패스워드를 부여 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 ◦ 점검기관이 제공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화상회의에 참여
	화상 회의 중/후	◦ “대기방” 기능을 사용하고, 회의 주최자 참여 전까지 회의시작 금지 ◦ 회의 참여자가 회의방에 참여시 알람기능(특정 소리 혹은 참여자 이름 등을 재생)을 사용하고, 화상회의 솔루션이 동 기능 미지원시, 회의 주최자가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 ◦ 대시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니터링하고, 익명의 청중도 확인 ◦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 내용을 녹화하지 말 것 ◦ 화면상에 민감한 문서 혹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웹 기반의 화상회의인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불필요한 기능(채팅, 파일 공유, PC화면 공유 등) 비활성화 - 공격자가 회의방 URL 혹은 회의 식별자(ID)를 추측하여 회의방에 무단침입할 수 없도록 PIN사용 - PC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자를 제한하고, 참여자가 PC화면을 공유하기 전 민감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상기 <*추가 보안대책*> ◦ 회의 주최자는 대시보드 기능을 사용해 모든 참여자의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 모든 참여자가 회의방 입장 후에는 회의방 잠금(locking) ◦ 오직 회의 주최자만 PC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 ◦ 회의 녹화 내용은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위해서는 암호구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상회의 플랫폼 내 저장되는 녹화내용은 모두 삭제